

공 시 송 달

- 재산압류 통지 -

- 공 고 기 간 : 2024. 7. 1. ~ 7. 15.
- 서류의 명칭 :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
- 압 류 일 자 : 2024. 6. 14.
- 공 고 내 용

채납자현황		서류의 명칭 및 내용	급수전 위치	체납 기간	체납액(원)				압류한 재산
주소	성명				계	상수도 사용료	하수도 사용료	물이용 부담금	
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2** 4***호 (방어동)	윤*옥	명 칭 :재산압류 통지 내 용 :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	울산광역시 동구 문제로 6* (방어동)	2023.5.~ 2024.5.	11,532,980	303,900	11,215,190	13,890	울산광역시 동구 문제로 6* (건물 및 토지)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2** (건물 및 토지)

위 재산압류 통지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본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(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41-1, ☎052-229-5724)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2024. 7. 1.

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

